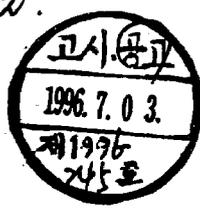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 전화 (02) 731-6773 / 전송 (02) 731-6374
 처리부서: 건설행정과(시청본관 5층) 담당 명대훈

문서번호 진행58150 - 1640
 시행일자 '96. 7. 7.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5년		
도로국장	"전결"		
건설행정과장			
시설관리계장			
기안	명대훈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입법예고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00호, '96.7.1)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따로붙임 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예고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기간 : '96. 7. 10 ~ 7. 30 (20일간)

따로붙임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입법예고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공보관
 참조 공보담당관

제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제 의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1. 공고안 : 따로붙임

257

도로국장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00호, '96.7.1)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조례 개정에 참고하고자 하니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유관단체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1996.7. 까지 건설행정과장 참조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일내 제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의견조회사항 : 따로붙임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따로붙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차장

수신처 기획담당관, 서관 1-2, 서실국1-16, 서본부 1-3

(제4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00호, '96.7.1)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유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본 조례 개정에 참고하고자 하니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유관단체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1996.7. 까지 제출하시고,

2. 본 입법예고안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관보 13250 호 '96.7.1)을 참조하여 빠른 시일내 구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사항 : 따로붙임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따로붙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서구 01 - 25(건설관리과장, 구로구 → 재무과장)

건행 58150-

1996.6.

(제5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00호, '96.7.1)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사항 : 따로붙임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따로붙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건설교통부(도로관리과장),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공 고 (안)

공고번호	9.16.21	1.285
담당	법제실장	담당관
소장	전관	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00호, 1996.7.1)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의 점용료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를 확대함
(500원미만 → 5,000원미만)

나. 폭 20m이상 도로의 도로법 위반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수입을, 현재 시수입에서 자치구수입으로 변경함

다.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함(예 : 1,950원 → 1,900원)

라. 점용료 산정방법에 있어 현행 정율제(공시지가×면적×율)로 산출하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및 어스양카에 대하여는 이를 관의 직경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정액제(1m당 가격×길이)로 변경 하며, 정액제에 의한 점용료 산출액을 1996년1월1일 이후분(어스양카 제외)부터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함

마. 점용토산정기준표에 있어서 관의 종류를 당초에 ①직경 0.1m이하 ②직경 0.1m초과 0.2m이하 ③직경 0.2m초과 0.4m이하 ④직경 0.4m초과 0.6m이하 ⑤직경 0.6m초과 0.8m이하 ⑥직경 0.8m초과 1.0m이하 ⑦직경 1.0m초과로 7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⑦직경 1.0m초과분을 ⑦직경 1.0m초과 2.0m이하 ⑧직경 2.0m초과 3.0m이하 ⑨직경 3.0m초과로 세분하여 9단계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31-6371~3, 6771~3, FAX 731-6374, 주소 : 중구 태평로1가 31, (우)100-74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 제3항중 "건설교통부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한다.

제 7조 제1항중 "5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치구가 징수한 과태료의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당이득금"으로 하고, "징수경비"를 "도로 관리비 및 징수경비"로 한다.

[별표1] 제1호중 "공동구·전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을 삭제한다.

제2호중 수도관·하수도관 등의 "직경 1.0m초과 17,500"을 "직경 1.0m초과 2.0m 이하 13,100"으로 하고 "직경 2.0m초과 3.0m이하 21,850"과 "직경 3.0m초과 30,600"을 신설하며, 기타의 관의 "직경 1.0m초과 26,200"을 "직경 1.0m초과 2.0m이하 19,650"으로 "직경 2.0m초과 3.0m이하 32,750"과 "직경 3.0m초과 45,850"을 신설한다.

제8호중 "어스앙카"를 삭제한다.

비고 제1호중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비고 제5호중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55원 → 1,400원, 1,955원 → 1,950원)"을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 → 1,900원)로 한다.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표 제2호의 점용불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양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96년도분부터 이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6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공사용 시설은 <u>건설교통부 표준품</u> <u>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u> <u>가설물로</u> 계상된 면적범위로 한다.</p> <p>2. ~ 3. (생략)</p>	<p>제 6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u>건설표준품셈</u> ----- ----- ----- 2. ~ 3. (현행과 같음)</p>
<p>제 7조(점용료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u>500원</u>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p>	<p>제 7조(점용료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① ----- ----- <u>5,000원</u>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세입구분) 자치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p> <p>1. ~ 2. (생략) (신 설)</p>	<p>제10조(세입구분) ① 자치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 ② 자치구가 징수한 과태료의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p>
<p>제11조(징수교부금) ① 자치구가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u>징수경비</u>로 해당구에 교부한다 ② (생략)</p>	<p>제11조(징수교부금) ① ----- 부 ----- <u>당이득금</u> ----- ----- ----- <u>도로관리비 및 징수경비</u> ----- ②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물 대비표

[별 표1]

현행	개정안																																																																																				
<p>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점용물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전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td> <td style="width: 50%;">송전탑·변압기·저장 고·공동구·전력구· 통신구·작업구(맨홀) ·기타</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전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변압기·저장 고·공동구·전력구· 통신구·작업구(맨홀) ·기타	<p>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점용물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전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td> <td style="width: 50%;">송전탑·변압기·저장 고·기타</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전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변압기·저장 고·기타																																																																												
점용물의 종류																																																																																					
전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변압기·저장 고·공동구·전력구· 통신구·작업구(맨홀) ·기타																																																																																				
점용물의 종류																																																																																					
전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변압기·저장 고·기타																																																																																				
<p>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점용물의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용료</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관.</td> <td>수도관.</td> <td>직경 0.1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850</td> </tr> <tr> <td>하수도</td> <td>하수도</td> <td>직경 0.1m초과 0.2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750</td> </tr> <tr> <td>관.전기</td> <td>관.전기</td> <td rowspan="2">직경 0.2m초과 0.4m이하</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500</td> </tr> <tr> <td>관.전기</td> <td>관.전기</td> </tr> <tr> <td>통신관.</td> <td>통신관.</td> <td>직경 0.4m초과 0.6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250</td> </tr> <tr> <td>가스관.</td> <td>가스관.</td> <td rowspan="2">직경 0.6m초과 0.8m이하</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7,000</td> </tr> <tr> <td>송유관</td> <td>송유관</td> </tr> <tr> <td rowspan="3">기타 이 와 유사 한 것</td> <td rowspan="3"></td> <td>직경 0.8m초과 1.0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8,750</td> </tr> <tr> <td>직경 1.0m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7,500</td> </tr> <tr> <td>기타의 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r> <tr> <td></td> <td></td> <td>직경 0.1m초과 0.2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600</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점용료	수도관.	수도관.	직경 0.1m이하	850	하수도	하수도	직경 0.1m초과 0.2m이하	1,750	관.전기	관.전기	직경 0.2m초과 0.4m이하	3,500	관.전기	관.전기	통신관.	통신관.	직경 0.4m초과 0.6m이하	5,250	가스관.	가스관.	직경 0.6m초과 0.8m이하	7,000	송유관	송유관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직경 0.8m초과 1.0m이하	8,750	직경 1.0m초과	17,500	기타의 관	1,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2,600	<p>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점용물의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용료</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관.</td> <td>수도관.</td> <td>직경 0.1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850</td> </tr> <tr> <td>하수도</td> <td>하수도</td> <td>직경 0.1m초과 0.2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750</td> </tr> <tr> <td>관.전기</td> <td>관.전기</td> <td rowspan="2">직경 0.2m초과 0.4m이하</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500</td> </tr> <tr> <td>관.전기</td> <td>관.전기</td> </tr> <tr> <td>통신관.</td> <td>통신관.</td> <td>직경 0.4m초과 0.6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250</td> </tr> <tr> <td>가스관.</td> <td>가스관.</td> <td rowspan="2">직경 0.6m초과 0.8m이하</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7,000</td> </tr> <tr> <td>송유관</td> <td>송유관.</td> </tr> <tr> <td rowspan="5">기타 이 와 유사 한 것</td> <td rowspan="5"></td> <td>직경 0.8m초과 1.0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8,750</td> </tr> <tr> <td>직경 1.0m초과 2.0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00</td> </tr> <tr> <td>직경 2.0m초과 3.0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1,850</td> </tr> <tr> <td>직경 3.0m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30,600</td> </tr> <tr> <td>기타의 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r> <tr> <td></td> <td></td> <td>직경 0.1m초과 0.2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600</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점용료	수도관.	수도관.	직경 0.1m이하	850	하수도	하수도	직경 0.1m초과 0.2m이하	1,750	관.전기	관.전기	직경 0.2m초과 0.4m이하	3,500	관.전기	관.전기	통신관.	통신관.	직경 0.4m초과 0.6m이하	5,250	가스관.	가스관.	직경 0.6m초과 0.8m이하	7,000	송유관	송유관.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직경 0.8m초과 1.0m이하	8,7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13,1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21,850	직경 3.0m초과	30,600	기타의 관	1,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2,600
점용물의 종류			점용료																																																																																		
수도관.	수도관.	직경 0.1m이하	850																																																																																		
하수도	하수도	직경 0.1m초과 0.2m이하	1,750																																																																																		
관.전기	관.전기	직경 0.2m초과 0.4m이하	3,500																																																																																		
관.전기	관.전기																																																																																				
통신관.	통신관.	직경 0.4m초과 0.6m이하	5,250																																																																																		
가스관.	가스관.	직경 0.6m초과 0.8m이하	7,000																																																																																		
송유관	송유관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직경 0.8m초과 1.0m이하	8,750																																																																																		
		직경 1.0m초과	17,500																																																																																		
		기타의 관	1,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2,600																																																																																		
점용물의 종류			점용료																																																																																		
수도관.	수도관.	직경 0.1m이하	850																																																																																		
하수도	하수도	직경 0.1m초과 0.2m이하	1,750																																																																																		
관.전기	관.전기	직경 0.2m초과 0.4m이하	3,500																																																																																		
관.전기	관.전기																																																																																				
통신관.	통신관.	직경 0.4m초과 0.6m이하	5,250																																																																																		
가스관.	가스관.	직경 0.6m초과 0.8m이하	7,000																																																																																		
송유관	송유관.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직경 0.8m초과 1.0m이하	8,7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13,1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21,850																																																																																		
		직경 3.0m초과	30,600																																																																																		
		기타의 관	1,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2,600																																																																																		

신·구조문 대비표

[별 표1]

현 행	개 정 안																																							
<p>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점 용 물 의 종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용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도관. 하수도 관.전기 관.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타의 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0.2m초과 0.4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2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0.4m초과 0.6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8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0.6m초과 0.8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4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0.8m초과 1.0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1.0m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6,200</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료	수도관. 하수도 관.전기 관.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기타의 관	직경 0.2m초과 0.4m이하	5,2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7,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0,4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3,100	직경 1.0m초과	26,200				<p>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점 용 물 의 종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용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도관. 하수도 관.전기 관.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td>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타의 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0.2m초과 0.4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2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0.4m초과 0.6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8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0.6m초과 0.8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4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0.8m초과 1.0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1.0m초과 2.0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6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2.0m초과 3.0m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2,7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경 3.0m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45,850</td> </tr> </tbody> </table>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료	수도관. 하수도 관.전기 관.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기타의 관	직경 0.2m초과 0.4m이하	5,2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7,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0,4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19,650	직경 2.0m초과 3.0m이하	32,750	직경 3.0m초과	45,850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료																																					
수도관. 하수도 관.전기 관.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기타의 관	직경 0.2m초과 0.4m이하	5,2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7,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0,4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3,100																																					
		직경 1.0m초과	26,200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료																																					
수도관. 하수도 관.전기 관.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기타의 관	직경 0.2m초과 0.4m이하	5,2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7,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0,4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19,650																																					
		직경 2.0m초과 3.0m이하	32,750																																					
		직경 3.0m초과	45,850																																					
<p>8.</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점 용 물 의 종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일시점용 한 것</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어스양카·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시점용 한 것</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 타</td> <td></td> </tr> </tbody> </table>	점 용 물 의 종 류		일시점용 한 것	기 타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어스양카·기타	일시점용 한 것	기 타		<p>8.</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점 용 물 의 종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일시점용 한 것</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시점용 한 것</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 타</td> <td></td> </tr> </tbody> </table>	점 용 물 의 종 류		일시점용 한 것	기 타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기타	일시점용 한 것	기 타																								
점 용 물 의 종 류		일시점용 한 것	기 타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어스양카·기타	일시점용 한 것	기 타																																						
점 용 물 의 종 류		일시점용 한 것	기 타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기타	일시점용 한 것	기 타																																						

[별 표] 비교

현	계 정 안
<p>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p> <p>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55원→1,400원, 1,955원→1,950원)</p>	<p>1. ----- <u>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u>로 한다. -----</p> <p>5. -----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1,900원)</p>
<p>6. 위표의 1호에는 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송유·송열·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p>	<p>6.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 관에는 어스양키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p>